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임재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2.

발의자 : 임재훈 · 장정숙 · 김수민
신용현 · 주승용 · 이찬열
김동철 · 정인화 · 김관영
김삼화 · 채이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%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%임에도 불구하고 국·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%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,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 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6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</p>

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